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심 사 보 고 서

2023. 3.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4월 7일, 김도읍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2년 4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9. 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2. 11. 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2. 15.)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도읍 의원)

현행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서는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결 절차와 관련된 조문인 제28조제2항(수수료),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제52조제7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53조제4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가 준용됨.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제52조제7항)은 의결에 관한 내용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제53조제4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임.

이는 2012년 6월 일부개정으로 종전 제53조제4항이 제53조제4항과 제5항으로 분리될 때에 제29조제2항에 명시된 “제53조제4항”이 “제53조제5항”으로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개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적 오류는 시급히 개정하여 법적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송병철)

가.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한 준용규정 정정(안 제29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생 략)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 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 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 다.	② ----- ----- ----- 제53조제5항-----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성립된 협의의 확
인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제29조제1항1)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열람, 보상액 산정 및 협
의 절차²⁾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
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 ④ (생 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³⁾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2조(심리)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략)

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 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그런데 현행 준용대상 규정 중 제53조제4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의 성립의 확인과는 관계가 작은 것으로 보임.

이는 종전 제5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내용이 2012년 6월 동법 개정에 따라 제53조제5항으로 이동한 것이 제29조제2항의 준용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법률 제1101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일부개정)	법률 제114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 6. 1. 일부개정)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 ③ (생략)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u>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⑥ (생략)

따라서 이러한 입법 미비 사항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한 날’로 하고 있는데, 동일한 입법취지 및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033)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입법미비를 조속히 개선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두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의하는 경우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김정재)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대안)에 일
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